

# 규정 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항목: COF-RA, JHC, JHC-RA  
책임 사무실: 수석 학업 책임관(Chief Academic Officer)

## 교직원 형사상 체포, 구형, 범죄 소송 처분의 자가 신고 양식 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

### I. 목적

Maryland 법은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유죄가 결정되거나 유죄를 인정 또는 불항쟁 답변을 한 개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의 고용 지원자는 신원조회를 통한 범죄기록 확인을 완수해야 합니다. MCPS는 고용된 모든 교직원이 이 규정에 명시된 형사상의 체포, 구형과 범죄 소송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모든 위반을 교직원이 자진 보고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진 보고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평안한 교육구를 제공하려는 MCPS의 노력의 일환이며 Section 6-113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에 따릅니다.

### II. 정의

- A. *체포(Arrest)*란 사람을 법적으로 구류하는 것입니다.
- B. *형사 고발(Criminal charge)*은 기소장(소환, 기소, 변상명령서 또는 영장 등) 발급을 포함한 기소 전 단계인 범행의 공식기소를 의미합니다.
- C. *유죄선고(Conviction)*는 개인의 범죄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려는 행동 또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의 유죄는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의 답변(nolo contendere, no contest)을 포함합니다.
- D. *처분(Disposition)*은 유죄선고, 무죄선고, 유죄 인정, 판결 전 보호관찰 등을 포함한 범죄 소송절차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 E. *자진 신고(Self-Reporting)*는 이 규정에 책정된 바와 같이 MCPS 고용인이 체포, 형사고발, 범죄에 대한 구류를 직접 또는 법적 대리인을 통하여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 (OEELR) 산하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진 신고

요건은 앞으로 2016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의 조치를 포함한 형사상의 체포, 구형에 적용됩니다.

### III. 행정절차

- A. MCPS에 고용된 직원(풀타임, 파트타임, 가채용, 정규채용, 임시 또는 계절 채용, 보조교사에 상관없이)은 다음에 적힌 어떠한 위법행위로 체포 또는 구형을 받았을 경우, DCI에 직원이 보고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체포 또는 구형의 7일 업무일 이내에 자진 보고해야 합니다.
1. 마약 또는 약물 배부에 관련되거나 Section 6-113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에 따른 범죄 리스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조치를 포함한 모든 체포와 형사고발을 신고해야 합니다.
    - a) 메릴랜드 형법 조항(Criminal Law Article of the Maryland) Code §3-307 또는 §3-308에서의 3, 4도인 성범죄와 다른 주법의 위반이 Maryland에서 Criminal Law Article §3-307 또는 §3-308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 b) 아동 성학대에 대한 Maryland 주 범죄법 조항(Criminal Law Article §3-602)을 위반하거나 다른 주법에서의 해당 조항을 Maryland 주에서 위반한 경우, Criminal Law Article §3-602 하의 아동 성적 학대로 간주합니다.
    - c) 폭력 범죄에 대한 Maryland 범죄법조항(Criminal Law Article) §14-101를 위반하거나 Maryland 주에서 다른 주의 §14-101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경우, 폭력 범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유괴 (2) 1급 방화 (3) 납치(4) 살인,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은 예외 (5) 신체상해 (6) 불구 (7) 살인 (8) 강간 (9) 강도 (10) 차량탈취 (11) 차량탈취의도 (12) 1급 성범죄 (13) 2급 성범죄 (14) 중죄, 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권총의 사용 (15) 1급 아동학대(16)미성년자 성적 학대 (17) 다음에 명시된 범죄에의 가담 또는 가담 시도 (1)-(16)에 명시된 범죄(18) 범죄법(§3-315 of the Criminal Law Article) 에서의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19) 1급 공격 (20) 살인을 의도한 공격 (21) 강간을 의도한 공격 (22)도독질을 의도한 공격 (23) 1급 성범죄를 의도한 공격 (24) 2급 성범죄를 의도한 공격을 포함합니다.
  2. 범죄행위가 일어난 장소나 직원의 업무 중에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B. 고용인은 다음 요구되는 정보를 DCI 에 MCPS Form 230-41, *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 양식을 통해 또는 전화,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포함해야 되는 정보: (a) 이름(name); (b) 직원번호(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c) 직책(job title); (d) 배정받은 모든 장소(all work assignment locations); (e) 구형 종류(nature of charges); (f)연락용 전화번호(contact telephone number) (g) 이메일 주소(e-mail address); (h) 최근 주소(updated street address)
- C. 이 규정에 따라, 고용인은 MCPS가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또는 다른 정보나 출처로부터 체포 또는 형사고발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DCI에 직접 자진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D.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대로, MCPS 고용인의 체포와 형사고발 자진신고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DCI에서 비밀을 유지하고 보관해야 하며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자료는 법이나 법원명령에 따른 내부 조사의 목적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E. 고용인의 자진신고에 따라 OEELR는 이 사건의 앞으로의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OEELR에서 내부조사를 실시할 경우, 고용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 F. 내부조사는 Montgomery 카운티 경찰국(Police Department)과 Montgomery 카운티 협력기관과의 양해각서와 모든 해당 법과 협력동의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의 학대나 방치에 관련될 경우, 내부조사는 MCPS Regulation JHC-RA,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의 신고와 조사(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에 따라야 합니다.
- G. 구형 또는 체포된 경우의 자진보고는 행정상으로 유죄로 간주되거나 취급 되지 않습니다.
- H. 재판절차의 결과 및 내부조사 결과가 미결일 경우, MCPS는 고용인을 공무휴직(administrative leave)시킬 수 있으며 고용인의 업무와 책임이 형사고발, 체포, 유죄선고와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또는 받고있는 혐의점으로 인하여 고용인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학생, 교직원, 조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I. 검토를 위해 DCI는 고용인이 기소장과 범죄 소송에서 받은 처분의 사본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J. MCPS 고용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직원은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 K. 규정에 따른 책임에 관한 질문은 DCI로 문의합니다.
- L. 이 규정으로 인하여 법,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의 다른 어떤 신고의 의무도 제한되거나 저촉될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Family Law Article § 5-561;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 6-113; *Annotated Code of Maryland*, Criminal Procedure Article § 1-101;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COMAR) 13A.12.05.02

규정 변경사: 새 규정, 2016년 6월 29일; 실질적 갱신판, 2017년 7월 24일.